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보험 설명서 무배당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은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보험,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자보호 미적용
원금 손실	원금 보장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	보험회사	계약자 부담

■ 자주 묻는 질문(FAQ):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유형 중도해지 관련 유의사항

A고객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 하였는데, 이전 시점에 사전에 안내 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됨에 이의를 제기

원리금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사전에 공시되어 있는 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며, 만기 이전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 전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주의 예금자보호법의 비보호 대상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민원상담분쟁조정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전화상담 (☎: 1577-4117)	생명보험협회	콜센터	☎ 02-2262-6565	
			인터넷상담	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	
분쟁조정	웹모바일 (💻: www.ibki.co.kr)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1 상품내용

■ 금리연동형

구 분	내 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B: 사용자, DC: 근로자, IRP: 가입자)	
상품개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을 월단위 변동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된 부담금을 포함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이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됩니다.	
보험기간	없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입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회사채·통안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패널티(예: 중도해지이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이율보증형

구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B : 사용자, DC : 근로자, IRP : 가입자)		
상품개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기간</td><td>1/2/3/4/5년</td></tr> </table>	이율보증기간	1/2/3/4/5년
이율보증기간	1/2/3/4/5년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형 적용이율</td><td>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 상기 특별 중도해지사유 중 일부는 퇴직연금 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DC/IRP: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 이율보증형 II (3년형)

구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B : 사용자, DC : 근로자, IRP : 가입자)		
상품개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기간</td><td>3년</td></tr> </table>	이율보증기간	3년
이율보증기간	3년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II 3년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부터 3년 동안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형 II 3년 적용이율</td><td> ○ 적용이율 - 1년차 : 부담금 납입시점의 해당월 적용이율을 1년간 확정 적용 - 2년차 : MAX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주)을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3년차 : MAX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 3년차 적용이율주2)을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주1) 2년차 적용이율 :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달의 적용이율 - 주2) 3년차 적용이율 :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달의 적용이율 </td></tr> </table>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이율보증형 II 3년 적용이율	○ 적용이율 - 1년차 : 부담금 납입시점의 해당월 적용이율을 1년간 확정 적용 - 2년차 : MAX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주)을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3년차 : MAX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 3년차 적용이율주2)을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주1) 2년차 적용이율 :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달의 적용이율 - 주2) 3년차 적용이율 :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달의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II 3년 적용이율	○ 적용이율 - 1년차 : 부담금 납입시점의 해당월 적용이율을 1년간 확정 적용 - 2년차 : MAX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주)을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3년차 : MAX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 3년차 적용이율주2)을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주1) 2년차 적용이율 :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달의 적용이율 - 주2) 3년차 적용이율 :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달의 적용이율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II 3년 적용이율 × 80%'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 상기 특별 중도해지사유 중 일부는 퇴직연금 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 :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DC/IRP :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 이율보증형 III

구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계약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상품개요	계약자(사용자)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계약자(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2/3/4/5년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III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이율보증형 III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table> <tr> <th>만기 구분</th><th>중도해지시점</th><th>중도해지이율</th></tr> <tr> <td rowspan="5">1년</td><td>60일 미만</td><td>적용이율 × 30%</td></tr> <tr> <td>60일 이상 120일 미만</td><td>적용이율 × 50%</td></tr> <tr> <td>120일 이상 180일 미만</td><td>적용이율 × 70%</td></tr> <tr> <td>180일 이상 300일 미만</td><td>적용이율 × 80%</td></tr> <tr> <td>300일 이상 1년 미만</td><td>적용이율 × 90%</td></tr> <tr> <td rowspan="5">2년</td><td>60일 미만</td><td>적용이율 × 30%</td></tr> <tr> <td>60일 이상 180일 미만</td><td>적용이율 × 50%</td></tr> <tr> <td>180일 이상 1년 미만</td><td>적용이율 × 70%</td></tr> <tr> <td>1년 이상 1년 10개월 미만</td><td>적용이율 × 80%</td></tr> <tr> <td>1년 10개월 이상 2년 미만</td><td>적용이율 × 90%</td></tr> <tr> <td rowspan="5">3년</td><td>60일 미만</td><td>적용이율 × 30%</td></tr> <tr> <td>60일 이상 1년 미만</td><td>적용이율 × 50%</td></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td>적용이율 × 70%</td></tr> <tr> <td>2년 이상 2년 10개월 미만</td><td>적용이율 × 80%</td></tr> <tr> <td>2년 10개월 이상 3년 미만</td><td>적용이율 × 90%</td></tr> </table>		만기 구분	중도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1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20일 미만	적용이율 × 50%	120일 이상 180일 미만	적용이율 × 70%	180일 이상 300일 미만	적용이율 × 80%	30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90%	2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80일 미만	적용이율 × 50%	18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70%	1년 이상 1년 10개월 미만	적용이율 × 80%	1년 10개월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90%	3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50%	1년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70%	2년 이상 2년 10개월 미만	적용이율 × 80%	2년 10개월 이상 3년 미만
만기 구분	중도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1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20일 미만	적용이율 × 50%																																			
	120일 이상 180일 미만	적용이율 × 70%																																			
	180일 이상 300일 미만	적용이율 × 80%																																			
	30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90%																																			
2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80일 미만	적용이율 × 50%																																			
	18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70%																																			
	1년 이상 1년 10개월 미만	적용이율 × 80%																																			
	1년 10개월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90%																																			
3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50%																																			
	1년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70%																																			
	2년 이상 2년 10개월 미만	적용이율 × 80%																																			
	2년 10개월 이상 3년 미만	적용이율 × 90%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만기 구분	중도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4년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50%
		1년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70%
		2년 이상 3년 미만	적용이율 × 80%
		3년 이상 4년 미만	적용이율 × 90%
	5년	1년 미만	적용이율 × 50%
		1년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60%
		2년 이상 3년 미만	적용이율 × 70%
		3년 이상 4년 미만	적용이율 × 80%
		4년 이상 5년 미만	적용이율 × 90%
	–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 상기 특별 중도해지사유 중 일부는 퇴직연금 제도로 별도 상이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 :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율보증형(일단위 만기지정식)

구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계약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상품개요	계약자(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계약자(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기간</td><td>11개월이상 2년미만</td></tr> </table>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율보증기간
이율보증기간	11개월이상 2년미만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형 (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td><td>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able>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이율보증형 (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위보험 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 × 80%」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 상기 특별 중도해지사유 중 일부는 퇴직연금 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 :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일 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이상 2년미만)인 경우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 이율보증형 III (일단위 만기지정식)

구분	내 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B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계약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상품개요	계약자(사용자)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계약자(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개월 이상 2년 미만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Ⅲ (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이율보증형 Ⅲ (일단위 만기지정식)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퇴직연금공시실) 사업자공시)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table><tr><th>중도해지시점</th><th>중도해지이율</th></tr><tr><td>60일 미만</td><td>적용이율 × 30%</td></tr><tr><td>60일 이상 120일 미만</td><td>적용이율 × 50%</td></tr><tr><td>120일 이상 180일 미만</td><td>적용이율 × 70%</td></tr><tr><td>180일 이상 300일 미만</td><td>적용이율 × 80%</td></tr><tr><td>300일 이상 1년 미만</td><td>적용이율 × 90%</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적용이율 × 90%</td></tr></table>		중도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20일 미만	적용이율 × 50%	120일 이상 180일 미만	적용이율 × 70%	180일 이상 300일 미만	적용이율 × 80%	30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90%	1년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90%
	중도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60일 미만	적용이율 × 30%															
60일 이상 120일 미만	적용이율 × 50%															
120일 이상 180일 미만	적용이율 × 70%															
180일 이상 300일 미만	적용이율 × 80%															
300일 이상 1년 미만	적용이율 × 90%															
1년 이상 2년 미만	적용이율 × 90%															
－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 상기 특별 중도해지사유 중 일부는 퇴직연금 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B :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일 단위 만기지정식(1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 디폴트옵션안정형이율보증형

구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DC, IRP 퇴직연금보험(무배당) 가입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IBK연금보험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 상품을 운용하고 운용위험 및 성과를 부담하는 자는 제도별로 다름 (DC : 근로자, IRP : 가입자)	
상품개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가입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3년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디폴트옵션 안정형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 안정형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kicokr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디폴트옵션 안정형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⑦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⑧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상기 특별 중도해지사유 중 일부는 퇴직연금 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재설정	•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2 기타사항

구분	내용	
예금자 보호여부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7항 제 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가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을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	
위법계약 해지	계약자(사용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사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77-4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주요내용 안내확인(설명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확인
필수	DC 기업형RP 개인형RP	이 퇴직연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리연동형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패널티(예: 중도해지이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율보증형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선택 하 신 상 품	금리연동형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되며,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 (1~5년형)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II (3년형)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부담금 납입간별로 납입일부터 3년 동안 경과기간에 따라 1년차 적용이율, 2년차 적용이율, 3년차 적용이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단, 2년차 적용이율이 해당 단위보험의 1년차 적용이율보다 낮은 경우 1년차 적용이율을 적용하며,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이 해당 단위보험의 2년차 적용이율 또는 1년차 적용이율보다 낮은 경우 1년차 적용이율과 2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로 적용하고,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III (1~5년형)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 (일단위 만기지정식)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III (일단위 만기지정식)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안정형 이율보증형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

설 명 내 용
상품유형, 가입대상, 상품개요, 상품구조, 보험기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여부,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설명서 및 운용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회사는 고객(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객은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명: _____ (서명/날인)

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BK연금보험 영업담당자: [소속] _____ [성명] _____ (서명/날인)